

## 세한대학교평의원회 소집 및 개최동의서

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 5조 내지 제 7 조에 의거하여 제2차 세한대학교평의원회 소집 및 개최를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 최 일 시 : 2018년 0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
2. 회 의 장 소 :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 본관 3층 회의실
3. 평의원회 안건 : 가.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  
나.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

2018년 02월 09일

세한대학교평의원회 의 원 남궁승태(남궁승태)  
의 원 장 필 식( )  
의 원 박 상 진( )  
의 원 박 희 석( )  
의 원 이 봉 숙( )  
의 원 전 노 선(전노선)  
의 원 박 장 현(박장현)  
의 원 강 창 규(강창규)  
의 원 이 주 현(이주현)  
의 원 김 용(김용)  
의 원 성 정 준( )

2018년도 제 2차

(2018. 02. 13)

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

세 한 대 학 교

#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

2018년도 제 2차

회의소집 통보일	2018. 02. 09
의원정수 11명	참석의원 6명

1. 일 시 : 2018. 02. 13. 11:00
2. 장 소 : 당진캠퍼스 본관 3층 회의실
3. 참 석

구 분	직 명	성 명	비 고
참 석	의 장	남궁승태	
불 참	부 의 장	박상진	
불 참	의 원	장필식	
불 참	의 원	박희석	
불 참	의 원	이봉숙	
참 석	의 원	전노선	
참 석	의 원	박장현	
참 석	의 원	강창규	
참 석	의 원	이주현	
참 석	의 원	김 옹	
불 참	의 원	성정준	

#### 4. 회의 안건

가.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.

나.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

#### 5. 회의내용

남궁승태 의장 :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2차 세한대학교 평의원

(간서명 : 박장현 , 강창규 , 이주현 )

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의 첫번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입니다. 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강창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강창규과장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강창규의원이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설명하다.)

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

<교비회계 >

(단위 : 천원)

과목명	지 출		
	추경예산(A)	본예산(B)	증감액(A-B)
보수	12,630,133	13,189,425	△559,292
관리·운영비	7,572,713	6,310,297	1,262,416
연구·학생경비	13,531,473	12,453,227	1,078,246
교육외비용	358,911	296,438	62,473
전출금			
예비비	1,360,000	1,532,800	△172,800
투자및기타자산지출	12,401	3,000	9,401
고정자산매입지출	5,733,680	7,127,845	△1,394,165
유동부채상환	875,000		875,000
고정부채상환	3,000		3,000
학교기업사업비		183,890	△183,890
미사용차기이월자금	61,412	622,528	△561,116
자금지출총계	42,138,723	41,719,450	419,273

남궁승태 의장 : 강창규의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.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-

박상진 의원 :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원안에 동의합니다.

남궁승태 의장 :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?

전 의원 : 없습니다.

(간서명 : 남궁승태 강창규 이주현 )

남궁승태 의장 :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 (안)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다음은 평의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 자문 건입니다. 본안은 이주현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(이주현의원이 평의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해 설명하다.)

## 평의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

### 1. 개정 사유

고등교육법 제19조의2(시행2018.01.01.)에 의거하여,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규정을 개정코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제 3 조 (구성 및 자격)에 “4. 조교 1명”을 신설하고, “4.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”을 “5.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” 로 개정하고,

제 4 조(위촉)에 “④ 전조 제1항 제4호의 평의원은 조교회의를 통해 추천한 조교로 한다.”를 신설하고,

제 5 조 (임원) ③항에 “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21조의 4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”를 “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13조의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”

제15조 (개방이사 추천) ①항에 “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21조의 3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”를 “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추천위원회) ①항에 “평의회에는 법인 정관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21조의 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.”를

“① 평의회에는 법인 정관 제13조의 1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.”로 개정하는 안입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 3 조 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전임교원 5명 2. 정규직원 4명	제 3 조 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전임교원 5명 2. 정규직원 4명

(관서명 : 박장현 . 강창우 . 이주현 )

3.재학생 1명 4.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	3.재학생 1명 4.조교 1명 5.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
제 4조 (위촉) ① -----생 략----- ② -----생 략----- ③ -----생 략----- ④ -----생 략-----	제 4조 (위촉) ① -----생 략----- ② -----생 략----- ③ -----생 략----- ④ 전조 제1항 제4호의 평의원은 조교회의를 통해 추천한 조교로 한다.(신설2018.03.01.) ⑤ -----생 략-----
제 5 조 (임원) ① -----생 략----- ② -----생 략----- ③ 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21조의 4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 ④ -----생 략----- ⑤ -----생 략----- ⑥ -----생 략-----	제 5 조 (임원) ① -----생 략----- ② -----생 략----- ③ 의장과 부의장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제13조의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 ④ -----생 략----- ⑤ -----생 략----- ⑥ -----생 략-----
제15조 (개방이사 추천) ①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21조의 3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	제15조 (개방이사 추천) ① 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19조 (추천위원회) ① “평의회에는 법인 정관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21조의 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과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.” ② -----생 략----- ③ -----생 략----- ④ -----생 략-----	제19조 (추천위원회) ① “평의회에는 법인 정관 제13조의 1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14조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과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.” ② -----생 략----- ③ -----생 략----- ④ -----생 략-----

남궁승태 의장 : 이주현의원으로부터 평의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.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-

전노선 의원 : 평의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동의합니다.

(간서명 :  ,  ,  )

남궁승태 의장 :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?

전 의 원 : 없습니다.

남궁승태 의장 :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.

(이어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록 대표 간서명자 3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박장현의원, 강창규의원, 이주현의원으로 선임할 것에 참석의원 전원일치 찬동하여 발의내용과 같이 대표간서명자를 선정하다)

남궁승태 의장 : 장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록이 정서 되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동안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## 6. 의결사항

-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.
-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.

(간서명 : 박장현 . 강창규 . 이주현 )

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의 첫번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입니다. 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강창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강창규과장은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강창규의원이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설명하다.)

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

<교비회계 >

(단위 : 천원)

과목명	지 출		
	추경예산(A)	본예산(B)	증감액(A-B)
보수	12,630,133	13,189,425	△559,292
관리·운영비	7,572,713	6,310,297	1,262,416
연구·학생경비	13,531,473	12,453,227	1,078,246
교육외비용	358,911	296,438	62,473
전출금			
예비비	1,360,000	1,532,800	△172,800
투자및기타자산지출	12,401	3,000	9,401
고정자산매입지출	5,733,680	7,127,845	△1,394,165
유동부채상환	875,000		875,000
고정부채상환	3,000		3,000
학교기업사업비		183,890	△183,890
미사용차기이월자금	61,412	622,528	△561,116
자금지출총계	42,138,723	41,719,450	419,273

남궁승태 의장 : 강창규의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.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-

박상진 의원 :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원안에 동의합니다.

남궁승태 의장 :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?

전 의원 : 없습니다.

(간서명 : *남궁승태* . 강 창 규 . *이영준* )



남궁승태 의장 :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 (안)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다음은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 자문 건입니다. 본안은 이주현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(이주현의원이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해 설명하다.)

###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

#### 1. 개정 사유

고등교육법 제19조의2(시행2018.01.01.)에 의거하여,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규정을 개정코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제 3 조 (구성 및 자격)에 “4. 조교 1명”을 신설하고, “4.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”을 “5. 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” 로 개정하고, 제6조(임기) ①항에 “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학생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.”를 “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학생 및 조교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.로 개정하는 안입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 3 조 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원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전임교원 5명 2.정규직원 4명 3.재학생 1명 4.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	제 3 조 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원회는 총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전임교원 5명 2.정규직원 4명 3.재학생 1명 4.조교 1명 5.동문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1명
제 6 조 (임기) ① 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학생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② -----생 략----- ③ -----생 략----- ④ -----생 략-----	제 6 조 (임기) ① 평의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학생 및 조교 평의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② -----생 략----- ③ -----생 략----- ④ -----생 략-----

남궁승태 의장 : 이주현의원으로부터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하여 설명을

(간서명 : 박장현 . 강광주 . 이주현 )

들었습니다.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-

전노선 의원 :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동의합니다.

남궁승태 의장 :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?

전 의원 : 없습니다.

남궁승태 의장 :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.

(이어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록 대표 간서명자 3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박장현의원, 강창규의원, 이주현의원으로 선임할 것에 참석의원 전원일치 찬동하여 발의내용과 같이 대표간서명자를 선정하다)

남궁승태 의장 : 장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록이 정서 되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동안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## 6. 의결사항

-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(안)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.
-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·개정(안)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.

(간서명 : 박장현

강창규

이주현 )

세한대학교 평의원회

의 장 남궁승태



부위원장 박 상 진

인

의 원 장 필 식

인

의 원 박 희 석

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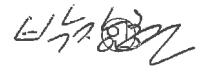
의 원 이 봉 숙

인

의 원 전 노 선



의 원 박 장 현



의 원 강 창 규



의 원 이 주 현



의 원 김 응



의 원 성 정 준

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18. 02. 13

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남 궁 승 태

(간서명 : 강 창 규 . 박 장 현 . 이 주 현 )